

종교인소득에 대한 「지급명세서」 제출 안내

-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,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2021년도 중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(신청하신 경우)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다음해 2월 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 '22.5.31.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(1인단체 포함)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미제출 시 소속 종교인은 근로·자녀장려금 등 복지 수혜와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하므로, '22.3.10.(목)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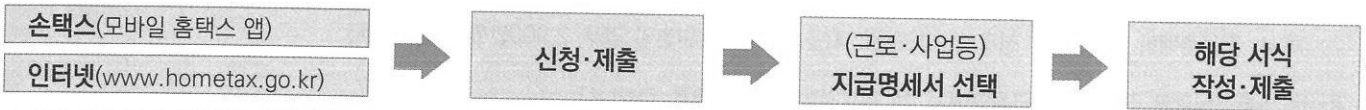
① 소득 유형별 신고 서식

기타(종교인)소득 신고 시		근로소득 신고 시
연말정산 선택	연말정산 미선택	
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(소득세법 제23호(6))	기타소득지급명세서 (소득세법 제23호(4))	근로소득지급명세서 (소득세법 제24호(1))

* 서식 찾기 :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▶ 국세신고안내 ▶ 종교인소득 ▶ 주요서식

- ② 종교활동비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은 지급명세서 「비과세소득」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

③ 제출 방법



*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전자 제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④ 유의 사항

- 지급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, 잘못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%가 가산세로 부과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» 작성방법 :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▶ 국세신고안내 ▶ 종교인소득 ▶ 참고자료실 ▶ 「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」 참조

2022년 2월 일

동화성 세무서장 (직인생략)

안내문 관련 문의는 국세조사관 우성식 (☎ 031-934-6404)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